

고성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/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3. 23.

제 출 자 : 고성군 수

1. 개정이유

본 조례의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용어 중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정의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하고 “농업·농촌 기본법”을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으로 함 (안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3호)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 - 864호(2009. 11. 24 ~ 2009. 12. 14)
 - 의견제출사항
- 관계법령 및 근거
 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고성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, “농업·농촌 기본법”을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중 “농업인”을 “농어업인”으로, “농업·농촌 기본법”을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”으로 하며, 제3호 중 “농촌”을 “농어촌”으로, “농업·농촌 기본법”을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"농업인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생산자단체,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.</p> <p>3. "농촌"이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4.~9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"농어업" 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-----.</p> <p>2. "농어업인" -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</p> <p>-----.</p> <p>3. "농어촌" 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-----.</p> <p>4.~9. (현행과 같음)</p>